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극동지역 전시범죄 재판 개관*

유하영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논문요약

이 논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지역 연합국이 설립한 소위 “BC형 전범재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서설적 연구이다. 일반적으로 극동국제재판소 헌장에 의한 도쿄 전범재판소만이 극동 전범재판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대부분의 사형 판결과 처벌 인원은 개별 전범재판소에서 이루어졌다. 국제법적인 성격이 강한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소 및 그 “후속 재판”에 비해 극동국제군사재판은 미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져 천황 및 소위 “731부대”의 불처벌 등 적지 않은 문제를 발생하였다.

한국의 경우 전후 국제질서를 형성함에 전승국도 패전국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해방이 되었고 연이어 남북분단과 한국전쟁으로 전후처리와 전후 국제질서 형성에 거의 참여하지 못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 패전 후 강제동원 피해자인 군무원(군속)과 일본군위안부는 일본 국적으로 간주되어 전범으로 처벌되고 어떠한 배상이나 보상도 받지 못했다.

극동재판 중에서 소련의 하바롭스크 및 중국의 개별 전범재판소에서의 일본 전범 처벌은 정의의 확립 차원에서 가치 있는 일로 평가된다. 또한 민간인 살해 및 포로 강제 노동, 생체실험 등에 대한 전범 처벌은 이후 국제인도법 규범의 확립에도 적지 않은 기여가 되었다. 잔혹한 전시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전시범죄를 예방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전시범죄와 인도에 반한 죄는 시효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주제어 : 도쿄, 후속재판, 주요전범, B.C형 전범, 하바롭스크, 731

* 이 논문은 2017년 동북아역사재단 단독 기획연구과제로 수행되었음을 밝힙니다.

I. 서론

2006년 일본 아베 총리의 1차 집권기에는 “A급 전범들은 일본법상으로는 전범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2차 집권 첫해인 2013년에도 “연합국측이 승자의 판단에 따라 단죄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발언은 “극동국제군사재판소”(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 :IMTFE) 11명의 재판관 중 인도 라다비노드 팔(Radhabinod Pal) 재판관이 “침략을 정의하기 곤란하다”며 무죄 주장 반대의견을 판결문에 첨부한데서 기인한다.¹⁾ 또 당시 변호인단 역시 “도쿄 재판은 승자의 ‘사후심판’에 해당 된다”는 주장은 1946년 앞선 종결된 뉘렌베르그 재판에서의 똑같은 논거와 주장을 되풀이 한 것이다.²⁾ 사실 팔 판사 견해는 뉘렌베르그 재판에서 제기된 주장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이었다. 특히 침략전쟁이라는 개념 정의는 국제법상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것은 단지 “승자에 의해 패자에게 붙여진 레벨”(a label applied by conquerors to the conquered)이라는 주장이었다. 한편 또 다른 개별의견 판결로는 재판소장 호주의 윌리엄 F. 웹(William Flood Webb)과 프랑스의 베르나르 앙리 재판관이 “일왕을 심판하지 않았다”는 개별의견이 첨부되었다.³⁾

당시 수석검찰관이었던 조셉 베리 키넨(Joseph Berry Keenan)은 “연합국이 원폭투하로 태평양전쟁 전체의 피해보다 더 엄청난 피해를 안겨주게 될 본토 결전을 저지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다. 역사의 선택지는 그것밖에 없었다. 일본이 원폭을 피할 수 있는 기회였다. 패배의 선택을 상주한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麿)의 상주문이 있었다. 천왕이 거부한지 168일만에 원자탄이 투

1) Babovic, Aleksandra, *The Tokyo Trial, Justice, and the Postwar International Order*. Osaka: Parglave Macmilan, Osaka Univ., 2019, p. 89.

2) 김석현, “국제인도법상 전범재판.” 『전후법으로서의 전시범죄 재판』, 동북아역사재단, 2017.12. pp. 35-40 참조.

3) “천왕의 권한은 그가 전쟁을 끝나게 했을 때 의문의 여지가 없을 만큼 증명되었다. 전쟁을 끝나게 할 때처럼, 전쟁을 시작할 때도, 그가 행한 역할은 검찰 측에 의해 도출된 부정할 수 없는 증거의 대상이었다... 전쟁을 하는 데는 천왕의 허가가 필요했다. 만약 그가 전쟁을 바라지 않았다면 그 허가를 하지 말아야 했다.” 朝日新聞法廷記者團, 『東京裁判』, 제2집, 1954, pp. 173-174.

하되었다.”라고 직시하고 또한 그는 “피고들에 의해 채택된 전쟁 계획은 특히 전쟁 포로, 민간인 그리고 일본 잠수함의 어뢰에 격침된 상선과 전함의 승조원 중 생존자들을 상대로 한 잔인함과 난폭한 만행에서 일본 전범들의 공모자인 독일 나치스트들이 지침으로 삼았던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극동재판이 한일병합을 둘러싼 일본의 침략 문제를 평화에 대한 범죄로 다루어야 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연합국이 일본 전범을 어느 시점으로 기산하느냐는 논의에서도 일본을 포함하여 62개국이 서명한 1928년 “Kellog-Briand Pact” (부전조약, 파리협정)을 기산 기점으로 정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일본 침략을 처벌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결국 이제 일본의 침략을 입증하는 책임은 피해를 입은 한국에 있는 것이다.⁴⁾

독일 전범의 처리에서 이른바 “주요전범”(major war criminals)을 뉘른베르그 국제군사재판소에서 처리하고 그 외의 전범들을 개별 연합국들에 의한 19개국 전범재판에 맡겼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극동국제군사재판소에서 주요 전범들에 대한 재판 이후에 많은 “후속 재판”(subsequent trials)들이⁵⁾ 도쿄 이외의 9개국 49개 재판소에서 이루어졌다.⁶⁾ 이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설립된 국제군사재판소 및 재판과정과 결과를, 극동지역 각국 국내 전범재판소를 개관하여 극동국제군사재판소 전시범죄의 처벌과 한계를 고찰한 뒤 결론에 이르기로 한다.

4) ПЕТРЕНКО, Владимир, “Неминуемый приговор японским милитаристам.” *ДВУ*, 11월호 2016; 이원홍, “일본과 일본인 제21화.” 『경제풍월』 제202호(2016), p. 12.

5) 뉘른베르그 IMT 후속재판은 나찌 인종정책 재판, 군사재판, 정부재판, 경제재판 등이 있다. 자세한는 Bernhardt, Rudolf,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Amsterdam: Elsevier, 1997, pp. 750-752 참조.

6) 김명기, 『국제법원론』 하, 서울: 박영사, 1997, p. 1422; The Nuremberg Trial and the Tokyo War Crimes Trials(1945-1948). <https://history.state.gov/milestones/1945-1952/nuremberg>(검색일: 2019.6.30.).

II. 국제법상 제2차세계대전후 전시범죄의 처벌

1. 전후 전시범죄 처벌에 관한 국제적 합의 : 전쟁의 종료를 위한 경고

이미 제2차 세계대전 중부터 연합국은 전후 전쟁범죄인을 처벌한다고 하는 의사통일을 꾀하고 있었다. 1942년 1월 13일 런던 세인트 제임스 궁전에서 열린 회의의 “전쟁범죄의 처벌에 관한 선언”(Inter-Allied Declaration on Punishment for War Crime)은, 독일 점령지에서의 공포정치를 비난하고 평화적 인민에 대한 폭행에 대해 소추·처벌할 결의를 표명했다. 이후 대일본 경고가 있었다. 그 회의 읍저버였던 운쯔 킹(Wunz King)은 중국이 전쟁범죄자들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이 추궁되도록 한다는 다짐을 하였다. 1942년 8월 21일 미국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보다 명확한 경고를 했다. 미국은 추축국들에 의하여 벌어진 전쟁범죄를 잘 인지하고 있으며, 장차 이루어질 기소에 유럽과 아시아에서의 야만적 범죄에 관련된 정보와 증거가 적절히 이용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⁷⁾

1943년 10월 연합국 “전쟁범죄위원회”(War Crime Commission)가 런던에 설치되어 전쟁범죄인의 처벌에 관한 준비가 시작되었다. 사실조사를 임무로 하고 있는 이 위원회는 수십 개의 조사단을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 파견하였다. 연합국에 의하여 해방된 지역에 파견되어 조사활동을 벌인 이들은 증거의 수집, 증인의 행방, 주민의 인터뷰, 석방된 포로의 진술 등을 채취했다. 1943년 10월 30일 “모스크바 선언”은 가해자들이 그 범죄가 행해진 국가의 법률에 따라 그 국가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것임을 규정하였다. 또한 범행이 특별한 지역적 연고를 가지지 않은 주요 전범들의 경우에는 연합국 정부의 결정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도 이 선언에 포함되어 있다.⁸⁾ 같은 해 11월

7) 이 회의는 벨기에, 프랑스 등 9개국의 망명정부에 의해 개최된 것이지만, 영국, 미국, 소련, 중국 등 여러 나라도 읍저버를 파견하고 있었다.

1일에는 모스크바 3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미국, 영국, 소련 3국 수뇌의 서명을 받은 “잔학행위에 관한 성명서”가 발표되어 잔학행위 등을 한 군인이나 나치스 당원을 독일이 범죄지 국가로 인도하는 것이 휴전조건이며, 지역적으로 한정되지 않는 중대 전쟁범죄인에 대해서는 연합국의 공동결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⁹⁾

유럽에서의 전쟁이 막바지로 다가서면서 이러한 전범처벌의 의지는 더욱 확고하고 빈번하게 천명되었다. “바탕 죽음의 행진”(Bataan Death March)에 관한 상세한 소식이 전해진 1944년 1월 미 국무성 헐 장관과 영국의 에덴 외무장관이 동시에 책임자의 처벌을 경고했다. 프랑스의 국민해방위원회 수반인 드골 장군도 1945년 5월 프랑스인과 인도차이나인들을 학대하는 어떠한 일본인도 전범자로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혔다.¹⁰⁾

1944년 5월 신설된 “충칭소위원회”는 중국의 왕충후이(王寵惠)를 위원장으로 하여 중국에서의 전범용의자 목록을 작성하는데 주력하였다. 1945년 8월 25일 유엔전범위원회는 일본의 전범용의자들이 국제군사재판소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유엔이 이들을 파악한 내용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였다. 이들 가운데에는 정부, 군부, 재정 분야의 주요 인사들이 망라되어 있었다. 한편 유엔전범위원회는 같은 해 8월 28일 일본의 전범에 관한 권고안을 채택하였다. 이

8) Mei, Ju-ao, *The Tokyo Trial and War Crimes in Asia*. Singapore: Palgrave Macmillan, 2018, p. 5; 1943년 10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수상 그리고 소련의 스탈린은 모스크바 회의에서 독일군이 점령하고 있던 수많은 국가들에서 “히틀러의 군대에 의하여 자행되고 있는 잔학행위, 대량학살 및 냉혹한 대규모의 처형들(atrocities, massacres and cold-blooded mass executions)의 증거를 입수하였다”고 하면서, 독일과의 휴전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상기의 잔학행위, 대량학살 및 처형에 책임 있거나 이에 동의적으로 가담한(took a consenting part) 독일군 장교 및 인사들 그리고 나찌 당원들은 이들 독립한 국가들과 그곳에 들어설 자유로운 정부의 법에 따라 재판받고 처벌받기 위하여 그들의 가공할 행위들이 범하여진 국가로 돌려보내질 것”임을 확인하였다. “Statement of Atrocities.” The Moscow Conference, October 1943. <http://avalon.law.yale.edu/wwii/moscow.asp>(검색일: 2019.6.30.); 김석현, “국제인도법상 전 재판,” p. 32.

9) 유하영, “극동국제군사재판소(IMTFE) 재판에서의 인도에 반한 범죄의 처벌.” 『동북아역사재단 뉴스』, 2018년 3월호, p. 9.

10) 1946년 12월 11일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안에도 전범의 개인 처벌(책임)은 재확인 되었다. Brownlie, Ian,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Fifth Ed. Oxford: Oxford Univ. Press, 1998, p. 566.

권고안은 광범하고도 지속적인 전범재판을 실시할 구상을 담고 있는 “중앙전범기구”(Central War Crimes Agency)를 설치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미국은 이러한 기구 대신에 연합군최고사령관의 권한으로 넘김으로써 미국 자신의 권한을 강화하였다.¹¹⁾

유럽에서의 전쟁이 이미 끝났으나 일본과의 전쟁은 아직 진행 중이던 1945년 6월 스위스 정부를 통하여 미국은 연합군 포로의 학살을 허용한 문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일본에게 통보하였다. 가장 중요한 논의는 역시 1945년 7월 26일의 “포츠담선언”이다. 이 선언 제10항에서 “미국, 영국, 중국, 그리고 소련은 일본인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노예화되거나 멸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포로에 대해 가해진 학대를 포함하여 모든 전쟁범죄자들에 대하여 엄격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였다.¹²⁾ 동 선언은 정치적 방침의 선언이며, 조약이 아니므로 일본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미국, 영국, 중국 등¹³⁾ 당사국에 대해서도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¹⁴⁾ 그러나 카이로 선언과 함께 이 선언은 일본의 “항복문서”에 의해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¹⁵⁾

2.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와 극동 국제군사재판소에서 전범 처벌

뉘른베르크 재판소와 도쿄 재판소의 기원, 구성, 관할권은 지리적 차이와 성격 외에 여러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달랐다. 독일의 정치 및 군사 지도자들을 기소할 계획은 1942년 성 제임스 선언에서 발표되었다. 이 선언에서 미국은 호주, 캐나다, 중국, 인도,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연합, 소비에트 연방,

11) 박원순, 『아직도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서울: 한겨레신문사, 1996, pp. 21~22.

12) 외무부, 『한일관계참고문서집』, 외무부, 1969, p. 4.

13) 구소련은 대일전에 참가한 동년 8월 8일 가입한 것이다.

14) Rosene, Sabtai, “The Effect of Change of Sovereignty upon Municipal Law.” *B.Y.I.L.* Vol. 27, 1950, p. 268.

15) 김명기, 『정신대와 국제법』, 서울: 법지사, 1993, p. 44.

그리고 독일의 9개 점령국 정부들과 함께 독일의 "침략 정책"을 처벌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선언문에는 "주요 전쟁 중에 위치한 정부들은 조직화된 정의의 경로를 통해, 그들이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그들을 저질러서, 혹은 그들과 함께 했던, 이러한 범죄에 대해 유죄이거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규정했다.

1945년 5월부터 6월에 걸쳐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 등 4개국 회의가 각각 런던에서 열렸으며,¹⁶⁾ 그 결과 8월 8일에는 유럽 추축제국(樞軸諸國)의 "중대 전쟁범죄인의 소추 및 처벌에 관한 협정(이른바 런던협정)"이 공포되었는데, 이 협정에는 모두 19개국의 연합국이 당사자로서 참가하였다. 이 협정에 부속된 국제군사재판소 헌장은 실제로 독일의 전쟁범죄인의 소추와 처벌의 법적 근거를 형성했다.

극동국제군사재판소는 1945년 11월 20일 개정된 뉘른베르그 국제군사재판소(Nuremberg IMT)의 틀에 따라 만들어졌지만 똑같은 것은 아니었다. 뉘른베르그 국제군사재판소가 국제협정에 의하여 설립되었던 것과는 달리, 극동국제군사재판소는 그 설립근거를 국제협정에 두고 있지 않았다. 법정의 구성 방법도 달랐다. 뉘른베르그 국제군사재판소가 진정한 '국제' 법정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었던 데¹⁷⁾ 비해, 극동국제군사재판소는 미국이 기소권을 장악하는 등 지배적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일본 천왕의 면책, 731부대 제외 등과 같은 자의적 운영이 가능했다.

유죄를 더 확실하게 한 것은 일본이 전쟁에 관한 국제법을 수없이 위반했다는 사실이다. 독일과 이탈리아에 억류되었던 영·미군 포로 중 4%가 전쟁중에 사망한 데 비해서 일본군에게 억류되었던 포로들은 경악스럽게도 27%가 사망했다. 대다수가 살해되었는데 대부분은 질병과 학대, 그리고 영양실조 때문이었다.¹⁸⁾

16) 何勤華 朱淑崩 吳贊, 『纽伦堡审判』, 北京: 商務印書館, 2015, p. 15.

17) 뉘른베르그 국제군사재판소가 국제협정에 의하여 설립되었던 것과는 달리, 극동국제군사재판소는 그 설립 근거를 국제협정에 두고 있지 않았다. 김석현, "국제인도법상 전범재판," p. 34.

18) 우쓰미 아이코(内海愛子), "일본에서의 전후보상운동: 한국인 BC급 전범문제를 중심으로." 『한일간 미해』

끝으로 뉘른베르그 전범 재판에서는 1945년 8월 8일 런던협정이 체결되고 1945년 11월 20일부터 1946년 10월 1일까지 나치 21명이 피고로 기소되어, 총216차 기일과 403차 개정되어 재판기록이 30만쪽에 이르고, 12명에게 교수형 판결이 내려졌다. 도쿄 국제군사재판은 1946년 1월 19일 구성되고 1946년 5월 3일 개정하여 818차 변론기일을 거쳐 1948년 11월 12일 선고 판결했다. 이 결과 기소된 28명 중 7명에게 교수형이 내려졌다.¹⁹⁾ 극동 개별 전범 재판에서는 49개 법정에서 약 5,700명이 기소되어 4,200명 유죄판결이 내려졌고, 사형 700명(巢鴨, 쓰가모 501명), 2,500명 유기이상 징역형을 받았다.²⁰⁾

3. 극동국제군사재판소헌장에서의 통상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한 죄

1946년 1월 19일 맥아더는 일반명령 제1호로 “극동국제군사재판소헌장”(Charter of International Military for the Far East ; IMTFE)을 공포하고 재판소 설립을 “특별선언”(Special proclamation)으로 공표했다. 4월 29일 28명을 기소하여 1946년 5월 3일부터 1948년 11월 12일까지 약 2년 7개월 동안 심리가 진행되었다.²¹⁾ 또한 동 선언 제3조에 의해 일본과 전쟁관계에 있는 연합국 국내에 전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했다.²²⁾ 극동에 있어서의 전쟁범죄인의 공정 신속한 심리 및 처벌을 위해 마련된 이 헌장은 제1장은 재판소의 구성, 제2장은 관할 및 일반규정을, 제3장은 피고인에 대한 심리, 제4장은 재판소의 권한 및 심리의 집행, 제5장은 유죄 무죄의 판결과 형의 선고를 규정하고 있다. 중요한 법률적 및 절차적 규정은 이 헌장의 부속문서인 재판절차규칙, 기소의 유죄항목 내용 등에 담겨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관할

결 과거청산 현안 점검을 위한 학술회의」(동북아역사재단, 2018.7.13.), p. 28.

19) Sedgwick, James Burnham, “The Trial Within : Negotiating justice at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 1946-1948.”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2012, p. 43.

20) 王昆仑, “新中國沈陽軍事法庭對日本戰犯的审判,” 沈陽師範大學, 2017, p. 6.

21) 기소된 그들은 모두 고위 관리였다. 그중 4명은 수상이었고, 4명은 외무장관, 5명은 전쟁관련 장관, 2명은 해군장성, 4명은 대사였다. 14명이 육군 장교였고 나머지 3명은 해군장교였다.

22) Mei, Ju-ao, *The Tokyo Trial and War Crimes in Asia*, p. 9.

의 문제였다. 재판소가 취급할 수 있는 범죄는 헌장 제5조에서 평화에 대한 죄, 전쟁법규 또는 관습법에 위반한 죄, 그리고 인도에 반한 죄 세 가지였다.

1946년 10월 1일 종결된 뉘렌베르그 재판소와 마찬가지로 통례의 전쟁범죄에 관해서는 이미 국제적 규범과 처벌의 관행이 형성되어 있었지만, 평화에 대한 죄와 인도에 반한 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확대된 전쟁범죄 유형이다. 평화에 대한 죄는 침략전쟁 그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므로 인해 정치적 보복으로 보는 견해도 없지 않다. 다만 인도에 대한 죄는 종래의 형벌규범에 비추어서도 죄가 되는 것들을 인도에 대한 죄목의 이름하에 통합하여 개념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일본은 장기간 침략전쟁을 일으켰으며, 포로학대 등 전시법규위반 및 일반 민간인에 대한 잔학행위를 감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태평양 전쟁의 개시가 당시 1940년 미국의 수출통제에 기인한 국민경제의 파탄을 돌파하기 위한 소위 “자위(self-defence) 전쟁”이었다는 황당한 논리와 주장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극동국제군사재판소 헌장 제5조에서 규정하는 전시 범죄는 다음과 같다.

“평화에 대한 죄”(Crimes Against Peace)는 침략전쟁 그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정치적 판단이 개재되기 마련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패전에 따른 정치적 보복으로 보는 견해도 없지 않았다. 다만 인도에 대한 죄는 종래의 형벌규범에 비추어서도 죄가 되는 것들을 인도에 대한 죄목의 이름하에 통합하여 개념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통상의 전쟁범죄(Conventional War Crimes) ; 전쟁법규 또는 관습법에 위반한 죄”는 전쟁법규 또는 전쟁관례의 위반으로 이루어진다. 1907년 “육전의 법규관례에 관한 조약(헤이그 육전법규)” 및 1929년 “포로 대우에 관한 조약”²³⁾ 등 전쟁 법규 또는 관례의 위반에 대한 것이다. 이 위반은 점령지 내의

23) 1929년에 체결된 3번째 제네바 협약은 '전쟁포로의 대우에 관한 협약'으로서 이미 1907년의 헤이그 조약에서 다루었던 전쟁포로의 보호에 관한 조항을 삼입하여 교전국은 상대국의 포로들을 인간적으로 대우하고 그들에 관한 소식을 알려주며, 중립국 대표의 포로수용소 방문을 허용하도록 했다. 일본은 이 조약을 '준용(準用)'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헤이그조약과 제네바조약에 서명은 하였지만 포로대우조약에 대해서는 비준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했다.

일반인민 살해, 학대 혹은 노예노동, 기타 목적을 위해 이송, 포로, 피억류, 약탈, 도시의 파괴, 군사적 필요로 인해 정당화되지 않은 황폐화 등을 포함한다.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는 전쟁 전 또는 전시 중 민간에 대하여 행해진 살육, 섬멸, 노예적 학사, 추방 기타 비인도적 행위 혹은 범행지의 국내법위반인지 여부를 불문한 본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죄의 수행으로서 혹은 이것에 관련하여 행해진 정치적 또는 인종적 이유에 기한 박해가 해당된다. 통상의 전쟁범죄에 관해서는 이미 당시 국제적 규범과 처벌의 관행이 형성되어 있었지만 평화에 대한 죄와 인도에 대한 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확대된 전쟁범죄의 유형이다.²⁴⁾

Ⅲ. 극동국제군사재판소(IMTFE) 재판과정과 결과

1. 전범 재판의 개시

1945년 9월 2일 항복문서 조인과 더불어 일본정부는 포츠담선언을 수용하였다. 일본 점령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연합국으로 구성된 극동위원회(Far Eastern Commission)가 12월 27일 설치되었다. 미국은 국무성, 전쟁성, 해군성 조정위원회(State-War-Navy Coordinating Committee, SWNCC)는 9월초에 이미 전범정책을 마련하여 맥아더에게 전달하였던 것이다. 이 정책 속에는 중일전쟁과 나아가 태평양 전쟁의 계기가 된 1931년 9월 18일 “묵덴”(Mukden, 瀋陽) 사건(만주사변) 이후의 전범용의자들의 구금과 일왕에 대한 불구금 원칙이 담겨 있었다.²⁵⁾

미국과 영국, 중국, 소련의 외무장관들이 연합국최고사령관을 자문하기 위한 극동위원회는 당초 항복문서에 서명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미국, 소련, 중국 외에도 필리핀과 인도가 추가되어 11개국이 극동위

24) 김명기, 『정신대와 국제법』, p. 1419.

25) 박원순, 『아직도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p. 23.

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 또한 항복문서의 실행을 위하여 “대일본 연합국 이사회”(The Allied Council for Japan)도 함께 설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합국의 기구들이 제대로 작동되지는 않았다. 또한 전범 용의자들의 확인, 소재 파악, 체포, 증거의 수집 등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미 미군의 상륙전에 많은 일본 군부에서는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증거의 인멸과 조작을 완료한 뒤였다. 일왕의 항복 방송부터 미군의 점령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일본 전쟁성에서는 몇일 밤낮으로 수 톤의 문서들이 불탔다고 전해진다.²⁶⁾

1946년 1월 19일 극동국제군사재판소헌장이 연합군사령부의 “일반명령”(General Order)으로 공포되었다. 이 헌장의 권원은 일본의 연합국에 대한 항복 선언과 거기에서 수용되고 있는 포츠담선언에 있다. 극동에 있어서의 중대 전쟁범죄인의 공정하고도 신속한 심리 및 처벌을 위해 마련된 이 헌장은 제1장은 재판소의 구성, 제2장은 관할 및 일반규정을, 제3장은 피고인에 대한 심리, 제4장은 재판소의 권한 및 심리의 집행, 제5장은 유죄 무죄의 판결과 형의 선고로 규정하고 있다. 중요한 법률적 및 절차적 규정은 이 헌장의 부속문서인 재판절차규칙, 기소의 유죄항목 내용 등에 담겨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관할의 문제였다. 재판소가 취급할 수 있는 범죄는 “평화에 반한 죄”, “통상의 전쟁범죄”, “인도에 대한 죄”의 세 가지였다(헌장 제5조).

전쟁범죄인의 재판은 1945년 12월 5일, 연합국최고사령관·총사령부(GHQ/SCAP General Headquarters/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에서 펴낸 “전쟁범죄피고인재판규정”(戦争犯罪被告人裁判規定)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이 전쟁범죄피고인재판규정에 따르면 군사위원회가 관할권을 가지고 전쟁범죄를 앞서 언급된 통상의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한 죄 이외 평화에 반한 죄 세 가지로 나누었다.²⁷⁾

본은 세계분쟁을 야기하고 침략전쟁을 일으켰으며 포로학대 등의 전시법규 위반 및 일반 민간에 대한 잔학행위를 감행하였다. 이에 도쿄 재판 기소장은

26) Mei, Ju-ao, *The Tokyo Trial and War Crimes in Asia*, p. 116; 박원순, 위의 책, p. 31.

27) 도쿄재판소헌장 제5조와 뉘른베르그헌장 제6조간 차이점은 Mei, Ju-ao, *Ibid.* p. 12. 참조.

범죄를 제1류 평화에 반한 죄, 제2류 살인, 제3류 통례의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한 죄로 3분하고 있다. 공소사실로서 55개 항목을 설정하고 부속서 A에 이러한 공소사실을 정당화하는 주요한 사실을 10개절에 걸쳐 예기하고 있다. 55개 공소사실 가운데 36개가²⁸⁾ 평화에 반한 죄, 16개가 살인, 3개가 인도에 반한 죄 또는 전통적 전쟁범죄에 관한 것이었다.

나머지 부속서 B, C, D에서는 일본이 침략 주요 조약, 일본이 위반한 공식의 보장 또는 전쟁법규를 열거하였다. 부속서 E에서 3종류의 범죄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피고의 약력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다. 21명의 피고인이 1931년의 만주침략을 시작으로 한 중국에 대한 침략전쟁을 기획, 시작하였던 혐의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다. 오카와 슈메이(大川 周明)와 시라토리 도시오(白鳥 敏夫)를 제외한 모든 피고인이 헤이그와 제네바협정을 위반한 통상의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한 죄가 부가되어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피고인에 대해 단독 또는 집단적으로 미국과 영국, 소련에 대해 침략전쟁을 기획한 혐의도 포함되었다.

2. 선고와 집행

“법이 없으면 처벌도 없다”(nulla poena sine lege)는 법언의 대명제 하에서 재판소 검사측의 기소에 의한 재판소의 최종 판결문은 도쿄 재판소가 극동국제군사재판소헌장에 구속되어 평화에 대한 죄 등을 규정한 재판소 헌장을 심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전체 55개의 소인(訴因)가운데 10개의 소인을 인정하고 있다. 나머지는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거나 각하하고 있다. 10개의 소인 가운데 8개는 평화에 대한 죄를 적용한 것이고 나머지 두 개의 소인이 통례의 전쟁범죄 및 인도에 대한 죄가 적용되었다. 검찰 측의 입

28) 혹자는 52개 소인이 평화에 반한 죄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Grundy, Hona, “A detailed analysis of the problems and pitfalls facing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with regards to its jurisdiction over the crime of aggression.” *Durham E-Theses*, 2009, p. 31.

중이 대부분 인정되어 25인의 피고인 전원이 유죄로 선고되었다. 특히 마쓰이 이와네(松井石根), 시게미쓰 마모루(重光葵) 두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모두 침략전쟁의 전반적 공동 모의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5종의 소수의견이 있었다. 다수의견에 반대한 것은 인도의 팔 판사, 프랑스의 앙리 베르나르(H. Bernard) 판사, 네덜란드의 롤링(B.V.A. Roling) 판사의 의견이었고, 다수의견을 인정하면서 개별의견을 낸 사람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웹 재판장, 필리핀의 자라닐라(Delfin Jaranilla) 판사 두 사람이었다.²⁹⁾

3. 극동국제군사재판소 도쿄 전범재판소 주요 쟁점에서의 한계

호주 출신의 Webb 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3인은 개별 판결문에서 검사단의 히로히토에 대한 불기소를 강력히 비판하였다.³⁰⁾ 일본 국민의 왜곡된 역사인식은 도쿄 재판에서 아시아인들에 대한 반인륜 범죄의 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한층 심각해졌다. 결과적으로 생체실험 및 생화학전, 강제노동 및 군대성노예 등 일본의 대표적인 반인륜범죄의 처리 또한 방기되었다. 일본군이 중국에서 자행한 생화학전은 미국 검찰국의 토마스 H. 머로우 대위가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였으나, 731부대의 만행은 면책의 대가로 세균전 관련 정보를 제공한 이시이 시로(石井四郎)에 대한 취조 요청을 상부에서 거부하면서 진전을 보지 못하였고, 독가스 사용은 결정적인 증거문서(支那事變に於ける化学戦例証集)도 확보되어 도쿄 전범재판의 기소내용에도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후 화학전 활용을 구상하던 미군 수뇌부의 압력으로 재판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³¹⁾

29) Babovic, Aleksandra, *The Tokyo Trial, Justice, and the Postwar International Order*, pp. 93-94; 재판부(판사) 구성에 관한 기록은 존 다우어 지음, 최은석 옮김, 『패배를 깨안고』, 민음사, 2009, pp. 605-606 참조.

30) B.V.A. Roling & C.F. Ruter(eds.), *The Tokyo Judgment*, Amsterdam: APA-University Press, 1977, p. 478 참조.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하는 강제노동 및 군대성노예 등의 문제는 미국 측이 준비한 기소장 초안에서도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한 죄가 발생한 지역에 한국을 포함시키고 있었기에 처벌이 가능하였으나, 연합국 검찰국의 무관심과 정부 수립 이전이었던 한국의 상황 등으로 인하여 거론조차 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남경학살을 제외한 일본의 주요 반인륜범죄에 대해 일본인들이 알 기회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도쿄 전범재판이 종결되었다.³²⁾

IV 개별 전범재판소에서의 전범 재판

1. 극동지역 개별 전범재판소

극동국제군사재판소 주요 재판은 1946년 5월 3일 도쿄에서 개정했다. 이 재판소는 흔히 '도쿄 전범재판'으로 흔히 불리지만 유럽의 뉘른베르그 국제군사재판소 및 19개국 전범재판소에서와 같이 극동 전범 재판은 도쿄에서만 열린 것이 아니다. 극동국제군사재판은 네덜란드 지배 지역에 12개, 영국 지배 지역에 11개, 중국에 10개, 오스트레일리아에 9개, 미국 점령 지역에 5개, 그리고 프랑스 지배 지역과 필리핀에 1개씩 총 49개의 극동국제군사재판소 재판정이 만들어졌다. 현재까지 필자가 파악한 도쿄이외 각국의 전범재판소 소재지로는 다음과 같다. 미국이 설립한 마닐라, 퀘젤린, 요코하마, 상하이, 광 전범재판소가 있다. 호주가 설립한 라부안, 몰로타이, 라바울, 포트다윈, 싱가포르, 마누스 전범재판소가 있다. 영국이 설립한 싱가포르, 쿠알라룸푸르, 타이빈, 라부안, 랑군(버마), 홍콩, 조홀바루, 페낭, 체셴턴 전범재판소가 있다. 네덜란드가 설립한 바타비아, 발릭파판, 마카사르, 몰로타이, 메나도, 암본, 쿠파, 반제르마

31) 731부대의 생체실험 및 세균전은 소련이 1949년 12월 자국이 확보한 12명의 부대원을 하바롭스크에서 재판하고 이듬해 재판기록을 출판함으로써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본 논문 주 51 참조.

32) 한국이 재판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존 다우어 지음, 최은석 옮김, 『패배를 꺼안고』, pp. 612-13 참조.

신, 홀란드야 전범재판소가 있다. 중국/중화민국이 설립한 북경, 상해, 남경, 서주, 한구, 심양(만주), 제남 전범재판소가 있다. 프랑스가 설립한 사이공(오늘의 호치민시) 전범재판소가 있다. 필리핀의 마닐라 전범재판소가 있다. 마지막으로 소련이 설립한 하바롭스크 등(불명) 총 9개국에서 설립한 총 49개 전범재판소가 설립되었다.

이러한 후속 재판은 국제 재판소가 아니라 국내 법원이나 군사위원회와 같은 단일 연합국가에 의해 운영되는 재판소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들 법정에서는 이른바 “B-C 형”(class)³³⁾ 개별 국내 전범재판을 실행하였고 피해국이 스스로 규정을 만들어 각국 법정에서 재판했다.³⁴⁾ 이들 재판에서 총 937명이 사형, 4,479명이 유기·무기징역,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실형은 주로 현장의 중간 관리직으로 대대장, 중대장 계급이 많이 기소되었고 상관의 명령을 따른 하급 병사도 기소됨에 따라 한국인은 총 148명이 유죄, 그 중 23명이 사형되었다. 조사된 각 국의 전범 처형자 수로는 미국이 140명, 호주가 119명, 영국이 241명, 화란이 220명, 중국이 149명(인민재판으로 3,500명 처형은 별도), 프랑스가 26명, 필리핀이 17명, 소련이 약 3,000명(비밀재판)으로 추정된다.³⁵⁾

극동국제군사재판소 9개국 재판소에서 B, C형 전범으로 기소된 5,700명 중에 148명의 조선인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통계가 있다. 다우어는 장교들에게 포로 학대 범죄를 조선인과 대만인 경비병들에게 뒤집어씌우라고 지시한 1945년 9월 17일자 일본 육군 훈령에 주의를 기울이기도 한다.³⁶⁾ 일본정부는 법무

33) 흔히 쓰이는 “A 급 전범재판”, “BC 급 전범재판”이라는 용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이는 극동국제군사 재판소헌장에 명시된 3가지 범죄인 평화에 반한 죄, 통상의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죄를 A, B, C로 분류한 것에서 유래된 것인데, 영어로 “Class A”, “Class B”, “Class C”라 하는 것은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은 것이 아니기에 “A 급”, “B 급”, “C 급”이 아니라 “A 형(부류)”, “B 형(부류)”, “C 형(부류)”라 번역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아시아(극동) 지역의 전범재판에서는 인도에 반한 죄(C)가 독립된 죄목으로 다루이지 않았기에 엄밀한 의미의 “C 부류 전범”은 없으며, “B 부류 전범” 밖에 없다. 뉘렌베르크 국제재판은 “주요 전범 재판(Trial of the Major War Criminals)”, 나머지 재판들은 “부수 전범 재판(trials of lesser war criminals)”이라 지칭되고 있다.

34) 茶園義男, 『日本 BC 級戰犯 資料 ①』, 東京 : 不二出版, 1988, p. 7.

35) 유사한 전범 처벌 통계수치로 존 다우어 지음, 최은석 옮김, 『패배를 꺼안고』, pp. 581-582 참조

36) 존 다우어 지음, 최은석 옮김, 『패배를 꺼안고』, p. 813.

부 민사국장 통달(法務府 民事局長 通達)의 형태로, 구식민지 출신자, 즉 조선인, 대만인들이 일본국적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은 1952년 4월 28일 대일평화조약 발효일로 정하고 있다. 이 원호법을 4월 1일로 소급하여 적용하면 일본국적을 가진 한국인이나 대만인도 원호법의 대상으로 포함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상자에게는 별도로 호적법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하였다. 국적법이 아닌 호적법을 적용하게 되면 일본 내에 거주하고 있는 식민지 출신자들에게 “내지”(内地) 호적법이 적용되지 않고 이들은 소위 “외지”(外地), 즉 조선이나 대만의 호적법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³⁷⁾ 따라서 이 원호법 적용에서 호적법을 추가로 적용한 것은 일본인이 아닌 제3국의 식민지 출신의 대상자들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포로의 학대, 민간인 학살 등의 다른 전범 처벌은 9개국에서 1945년에서 1956년까지 진행된 재판에서 현지의 군사령관에서부터 하사관, 일반 병사, 통역 및 포로 감시원들인 군속에 이르기까지 약 5,702명이 기소되었다.³⁸⁾ 재판 결과 사형 934명(조선인 23명), 무기징역 475명(조선인 18명), 유기징역 2,944명(조선인 107명), 무죄 1,018명이 확정되었다. 군속 등으로 끌려가 피해를 입은 한국인은 148명(포로감시원은 129명)이 유죄가 되었다.³⁹⁾ 공소기각, 사망, 도주도 279명에 달한다.⁴⁰⁾ 대만인은 173명이 유죄판결을 받았고, 26명이 사형되었다. 전쟁추진세력으로 지목된 군인과 정치인, 국가주의 단체 유력자, 특고

37) 식민지 통치 하에서 일본인은 ‘내지호적(内地戶籍)’ 조선인은 ‘조선호적(朝鮮戶籍)’으로 나누어 있으며, 양자나 혼인 등의 신분행위 이외에는 호적의 이동은 못 하였다. 1923년 7월 12일 시행한 ‘조선호적령’으로 조선인을 대상으로 조선호적을 편성하였으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표시에 조선호적에 있는 자를 조선국가 구성원으로 하여, 이들에 대한 일본국적을 상실한다고 하였다. 원호법에서 국적이 아니라 호적을 가져온 것으로 내지호적에 없는 조선인-대만인에 대한 지원이 배제되었다. 内海愛子, 『戦後補償から考える日本とアジア』, 東京: 山川出版社, 2002, p. 52.

38) 1999년 8월 법무성은 BC급 전범으로 기소된 5,702명 중, 사형 984명, 유죄 4,404명(기타 314명)이라는 숫자를 발표하였다. 内海愛子, 위의 책, p. 53.

39) 이들은 1942년 8월 이후 강제 동원돼 동남아에서 근무한 포로감시원 129명과 통역 16명, 필리핀 방면의 군인 3명이었다.

40) 1945년 12월 11일, 13일에는 네덜란드 인도 검찰총장과 영국 당국자간 싱가포르에서 합의로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취급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상호, “맥아더와 극동국제군사재판,” 『세계와 소통하는 한국학』, (세계한국학 대회, 2008. 9.), p. 8.

(특별고등계)와 작가, 언론인, 경제인 등의 군국주의자 등 총 193,602명이 공직추방자로 되었다.

동남아시아에 각국에서는 9개국 약 49개소에서 독자적 국내법령을 만들어서 재판을 했다. 실제로 BC급 전쟁범죄인으로서 기소된 사람들은 모두 통상의 전쟁범죄를 범한 사람들이었다.⁴¹⁾ 이 중에 전쟁에 동원된 한국인과 대만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4,403명)의 7% 정도가 식민지 출신자였던 것이다. 이들은 주로 군속으로 포로수용소 감시원으로 활동하였다. 실제 재판에서는 상관의 명령에 따를 뿐인 하급병사 및 군속들이 그 책임을 받아서 처벌되었다. 최초 연합군은 태면철도 건설 등에 동원된 연합군 포로의 학대 및 사망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였으나 실제 전후 전범 재판에서는 전쟁을 수행한 최고지도부와 포로를 직접적으로 학대한 말단 관리의 죄를 묻는 형태를 취하였다.⁴²⁾

2. 전쟁 범죄에 대한 각국의 전범처벌 개요

이하 개별국가 전범재판소에서의 판결의 주요 내용을 고찰하기로 한다.

(1) 중국/중화민국 전범재판

1945년 12월 6일 중국 국민정부는 “전쟁범죄처리위원회”를⁴³⁾ 설립하고 남경과 상해 학살 등에 대한 책임을 진 피고들을 포함하여 880명이 넘는 전범들을 재판했다. 8백명 중에서 5백여명이 기소되었고 그중에서 149명이 사형에 처해졌다. 광주에 설립된 광동군사법정에서는 화남지구, 해남도에서 약 65여

41) 大須賀, ウィリアム, 『ある日系二世が見たBC級戦犯の裁判』, 東京: 草思社, 1991, pp. 40-41.

42) BC급 전범 중, 유죄를 받은 이의 7.29%는 구 식민지 출신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포로수용소 감시원이었다. 조선인의 경우, 148명 가운데 129명이 감시원이었다. 1명은 필리핀 포로수용소 소장이었다. 즉, 조선인 전범 중 130명(78%)이 포로 관계였다. 内海愛子, “김은 왜 심판을 받았는가-식민지 지배-전쟁재판-전 후보상을 생각한다.” 『제3회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한일공동기획 특별전: 전범이 된 조선청년들, 한국인 포로감시원들의 기록』(민족문제연구소, 2013), 57쪽.

43) 严海建, “南京审判研究,” 南京师范大学, 2007, p. 3.

명, 베트남지역에서 200명, 태국지역에서 약 300명을 재판했다.⁴⁴⁾ 실 사례로 1947년 중국 군사재판부는 중국인들을 생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군 요네무리 하루키(?)와 고문, 강간, 약탈의 혐의로 기소된 시모토 지로(?)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6개월 뒤 이들은 상하이 남경로에 내몰려 끌려 다니다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총살되었다.⁴⁵⁾

중국 셴양 전범재판(Shenyang War Crimes Tribunal, 沈阳战犯军事法庭)에서는 1956년 6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만주국 국무원 총무장관을 지낸 다케베 로쿠조(武部六藏), 육군 중장 후지타 시게루(藤田茂) 등 B형 전범 36명의 재판이 열렸다. 중국은 1950년 7월 당시 소련으로부터 인수한 일제 관동군 전범들을 랴오닝성 푸순(抚顺) 전범관리소에 수용해 조사·교화했으며, 1956년 셴양과 산시성 타이위안(太原)에 특별군사법정을 열어 45명을 기소, 8~20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⁴⁶⁾ 한편 1946년 도쿄 극동국제군사재판소에서 이루어진 목격자 진술 및 재판에서 이용된 매장 기록을 보면 약 2~30만 명의 민간인과 비무장 군인이 학살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련법정의외 중국공산당 법정에서도 731부대의 생체실험이 밝혀졌다. 중국 공산당에 체포된 13명(관동군 헌병대 수송책들까지 포함)이 잡혀 셴양, 푸순 및 타이위안 전범재판에 회부되어 심리와 재판을 받고 시베리아 유형 6년, 만주 유형 10년의 강제노역을 했다. 미국에 항복한 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면 받았다.

최근 중국은 하바롭스크 전범재판 녹음자료 수집과⁴⁷⁾ 전범 사사키 노스케(佐佐眞之助)의 자백서 공개⁴⁸⁾ 등 극동국제군사재판 관련 연구 및 디지털 자료화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44) 茶園義男, 『BC 級戰犯軍事法庭資料 ②』, 東京: 不二出版, 1984, p. 7.

45) "How the Tokyo Trial Crumbled." <http://cretaceous.tistory.com/58>(검색일:2019.6.30.).

46) 中國情報, "셴양시(沈阳市), 일제 전범 재판했던 '특별군사법정' 복원 개관."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dasolsys01&logNo=220003786349>(검색일:2019.6.30.).

47) "出离愤怒了!除了731日军竟然还有一支细菌部队(분노, 731 세균부대의 실제)."

http://m.sohu.com/news/a/230812985_428290(검색일: 2019.6.30.).

48) 人民網, "中, 日전범 사사키의 중국 침략 친필 자백서 공개," 2014.7.7.

(2) 소련 (하바롭스크) 재판

1945년 8월 8일 대일선전포고하고 60만 관동군을 무장해제하였다. 러시아 하바롭스크 전범재판(러시아어: Хабаровский процесс 하바롭스크 프라세스)은 제2차 세계 대전 후 1949년 12월 25일부터 30일까지 소비에트 연방 하바롭스크의 장교회관에서 일본군 전범 피고에 대해 6일간 열렸던 군사 재판이다. 일본인 피고들은 소련군에게 포로가 된 관동군 지도부와 생체실험 및 세균전 관계자 12명이다. 주된 혐의는 1939년의 “노몬한(诺门罕, Номонхан, Nomonhan) 사건”(다른 이름 Battle of Khalkhin gol), 소련에 대해 전쟁연습을 행한 1940년의 관동군의 특종연습, 1925년 제네바협약에 위반되는 731부대와 100부대의 생체실험 등이다.⁴⁹⁾ 러시아재판은 국제군사재판소가 당시 충분한 증거도 가지고 있지 못한 일본의 “세균무기의 제조와 사용”에 집중됐다. 일본은 1935년경부터 이러한 준비를 시작했으며 전염병을 유행시키기 위해서 파리를 길렀다고 했다. 게다가 러시아법정은 일본이 인간을 실험재료로 사용했으며 실제로 중국에서 1940년과 1942년 사이에 세균을 사용했다고 판결했다.⁵⁰⁾

이 재판에서 아마다 오토조(山田乙三) 관동군 사령관과 세균무기 제조와 사용, 생체실험을 행한 가지즈카 류지(梶塚隆二) 군의중장, 다카하시 다카아쓰(高橋 隆篤), 수의중장, 가와시마 기요시(川島 清) 중장, 사토 순지(佐藤 俊二) 이 각각 25년 강제노동형을 받았고, 나머지 인물들도 2년에서 20년까지의 강

49) 731부대는 일제가 세운 생물전 연구기관 중 하나였으며, 516부대(치치하얼 시, 齊齊哈爾), 543부대(하이러얼 시, 海拉尔), 773부대(Songo), 100부대(창춘, 長春), 1644 부대(난징, 南京), 1855부대(베이징, 北京), 8604부대(광저우, 廣州), 200부대(만주), 9420부대(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각지에 세워진 기관도 731부대와 유사하거나 731부대의 생체실험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였다.

50) Материалы судебного процесса по делу бывших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японской армии, обвиняемых в подготовке и применении бактериологического оружия. М: Госполитиздат, 1950.(세균 무기를 준비하고 사용한다고 기소된 일본 육군의 전 군인의 재판 자료, 주정부 정치출판사, 1950); “Обвинительное заключение по делу бывших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японской армии. Газета «Правда» №358 (11465) от 24 декабря 1949 г.(전 일본 군대 군인의 기소.” Pravda, 1949.12.24; Обвинительное заключение по делу бывших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японской армии. Окончание. Газета «Правда» №359 (11466) от 25 декабря 1949г.

제노역형을 받았다. 가벼운 형을 받은 사람은 기한이 되어 석방돼 일본으로 돌아왔고 감옥에서 병사하거나 자살한 이를 제외한 이들은 1956년 소비에트 연방과 일본간 국교회복 후 감형으로 모두 일본으로 귀국했다. 특히 731부대와 관련된 많은 과학자가 전후 정치, 학계, 사업, 의학 부문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⁵¹⁾

(3) 영국 전범재판

마지막 인도총독이며 극동지역 영국군 사령관인 루이스 마운트배튼(Luis Mountbatten)은 처음부터 전범재판은 형사상의 범죄에 관한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영국은 순전히 정치적 성질을 가진 재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형의 확정은 의심할 여지없는 증거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영국의 재판관들은 말레이 반도 남북부, 보르네오, 뉴브리튼, 랭군, 싱가포르 등의 전 아시아 전체에 걸쳐 기소된 일본 전범들을 재판했다. 기소된 피고인은 총 918명으로 이 중 아시아계 민간인에 대한 범죄로 재판받은 사람은 550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한다. 영국과 호주 등 서구 연합국 포로에 대한 범죄로 재판 받은 사람은 227명으로 25%를 차지한다.⁵²⁾

영국은 싱가포르,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미얀마, 홍콩 등의 법정에서 1946년 1월 21일부터 1948년 12월 20일까지 재판을 진행하여 전범을 처벌했다.⁵³⁾ 싱가포르 법정에서는 5천명의 중국인(화교) 학살 및 유럽인인에 대한 잔인한 학대, 점령지주민의 무차별 살해, 16,000명의 연합군포로 살상, 10만명이상의 고통스런 노동으로 인한 죽음, 버마, 타이철도 건설 중의 학대, 바탕 및 보르네오에서의 죽음의 행진, 방카섬(Pulau Bangka)에서의 오스트레일리아 간호부와 시민의 대량학살, 파라윈의 학살, 뉴기니아 돌 농원에서의 학살, 나하에서 2백명 포로의 학살 등 곳곳에서의 잔혹한 살해와 학대는 결코

51) 孙家红, 『伯力城审判』, 北京:九州出版社, 2014, pp. 17-29.

52) 하야시 히로후미 지음, 현대일본사회연구회 옮김, 『일본의 평화주의를 묻는다』, 서울: 논형, 2008, pp. 56-57.

53) 林博史, 『BC 級戦犯裁判』, 岩波新書, 2005, p. 77.

점령군의 개인이나 일개 부대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전쟁정책 결정자나 지휘관의 지시 또는 암묵적 승인 아래 이루어졌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검찰 측 주장이 있었다. 1946년 말레이반도의 민간인을 살상한 35명의 일본 헌병대 요원들에 대한 재판에서는 21명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다. 그들에 대한 두번째 재판에서는 영국 포로에게 고통을 주었다는 이유로 8명 이상을 교수형에 처했다. 영국의 재판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버마-삼철도를 세운 2천여명의 포로 중 거의 6백명에 달하는 포로를 죽게 한 소위 “콰이강” 피고에 대한 재판이었다. 영국법정은 재판으로 일본군들이 포로들과 민간인들을 노예로 삼고 갖은 학대를 일삼은 것이 밝혀졌고 악질범중 두 명을 교수형에 처하고, 나머지는 장기 투옥시켰다.⁵⁴⁾

(4) 호주 전범재판

영국, 미국과 마찬가지로 호주 법정도 정의는 공정하게 행해져야 하며 또 공정하게 행해진 것으로 생각돼야만 한다고 확신했다.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호주는 전쟁범죄에 대한 35개의 상세한 세부범죄 항목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평화에 반하는 범죄”를 포함하고 있었고, 일반적인 범죄뿐만 아니라 “카니발리즘”(同種捕食, cannibalism) “시체를 자르는 행위”같은 잔혹하고 기괴한 것을 포함하는 다량의 특정범죄까지 포괄하고 있었다. 호주의 법정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일본인들이 빠졌던 타락의 깊이를 보여주었다. 태평양 전쟁 중에 일본군의 가장 큰 기지였던 뉴기니 뉴브리튼섬 라바올에서 약 1천명으로 추정되는 영국과 미국의 전쟁포로들에 대해 165 마일 떨어진 아주 열악한 곳으로 내몰았다. 오직 183명만이 이 여정에서 살아남았으나 그중 150여명이 도착 직후 숨을 거두었다. 뉴기니에서의 한 재판은 호주인 포로 시체의 일부를 먹어버린 일본군 장교를 기소했다. 배고픔이 자신으로부터 감각과 이성을 빼앗아 버렸다는 항변에 아랑곳하지 않고 호주법정은 그를 교수형에 처했다. 호주

54) 하야시 히로후미 지음, 현대일본사회연구회 옮김, 위의 책, p. 58.

법정은 전후 전시기에 걸쳐 가장 큰 재판을 맡았다. 즉 미군, 호주군, 네덜란드군 포로들을 암본에서 잔인하게 학대한 혐의로 93명의 일본군을 기소하여 사형을 집행했다.⁵⁵⁾

(5) 필리핀 전범재판

필리핀 법정에서는 총 215명의 일본인들이 군사재판위원회에 회부되고 20명이 무죄로 석방되었고 악질 전범 야마시타 도모유키(山下奉文, Yamashita Tomoyuki), 호마 마사하루(本間雅晴, Homma Masaharu)를 포함한 92명이 사형에 처해졌다. 1947년 미 당국은 2,800명 이상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구로다 시게노리(黒田重徳)를 포함해 남아 있는 여러 재판을 필리핀 검찰 측에 넘겼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 도쿄에서의 A급전범자 용의자들에 대한 구금이 느릿느릿 진행되는 동안 아시아지역 곳곳에서 이미 전범재판이 열리고 있었다. 마닐라에서는 “말레이시아의 호랑이”(マレーの虎)로 이름을 날렸던 “마닐라 대학살”의 주범 야마시타는 이미 1945년 10월 29일 기소가 된 상태였다. 12월 7일에는 사형 선고가 이루어지고 1946년 2월 2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교수형에 처해졌다. 야마시타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한 행위 때문에 재판을 받을 수 천명 중 한 사람에 불과했다. 야마시타의 경우처럼 기소 검사측은 피고들이 당시 만연해있던 잔학행위를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며 그것을 중단시킬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⁵⁶⁾

55) “태양 아래서의 정의, 특별기획: 일본, 어제의 군국주의 그리고 내일.” [http://cafe.daum.net/kookminjp/3vYg/134?q=카니발리즘 시체를 자르는 행위 호주 전범\(검색일: 2019.6.30.\)](http://cafe.daum.net/kookminjp/3vYg/134?q=카니발리즘 시체를 자르는 행위 호주 전범(검색일: 2019.6.30.))

56) 제2차 세계 대전 중인 1945년 2월에 필리핀에서 퇴각하던 일본군이 필리핀 마닐라의 민간인에게 자행한 약탈, 강간 및 학살 사건이다. 많은 동서방의 신빙성 있는 자료에 따르면, 이 학살에 따른 희생자 수는 약 100만명에 달한다. 이 사건은 미군 약 1,000명과 일본군 약 16,000 명이 전사한 마닐라 전투 중 발생한 최악의 사건이었다.

(6) 미국 전범재판

미국은 요코하마, 마닐라, 상해, 광, 퀘젤린 등에서 전범재판소를 설립하여 총 1,229명을 유죄 판결했다.⁵⁷⁾ 요코하마에서는 도쿄 전범재판이 열리기 전부터 하위급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B, C형 전범으로 재판받기 시작하였다. 피고들은 여러 계급의 군인들을 비롯해 신관(神官), 의학자, 교수, 농부 같은 전혀 이질적인 사람들이었다. 대부분의 재판은 수 천명의 죽음을 가져온 포로학대, 굶주림, 구타 등에 관한 것이었다. 결국 854명이 요코하마에서 재판받았고 그 가운데 51명이 처형되었다. 미국법정에서는 웨이크섬 생체실험, 규슈제대 의대 생체실험, 사이판 생체실험, 팔라우 생체실험, 오료코호 생체실험 등 많은 생체실험이 밝혀졌고 전범들은 모두 사형에 처해졌다. 많은 미국 재판이 태평양 제도에서 저질러진 범죄를 대상으로 열렸다.

미국 군사재판위원들은 중국 국민당과도 협력했다. 특히 중국전범재판을 위해서 증인과 혐의자들을 일본에서 중국으로 수송하는 일에 협조했다. 상해에서 미국법정은 중국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수행할 준비를 하였다. 미국의 중화민국/상해 법정에서는 100인 참수 경쟁, 300인 목베기 등이 밝혀졌고, 전범 5백 명이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그중 노다 쓰요시(野田 毅), 무카이 도시야키(向井 敏明), 다나카 군키치(田中 軍吉), 다니 히사오(谷寿 夫) 등 149명이 사형에 처해졌다. 다른 주목할 만한 재판으로는 악명 높은 지옥선 오료코호(의학부대 생체실험 순양함)에 관련된 재판도 있었다. 그 배에서는 1944년 필리핀에서 일본으로 가는 도중 1천 3백여명의 포로들이 살해됐다. 위병사령은 그의 통역관과 마찬가지로 사형에 처해졌다. 특이한 것은 재판위원회가 당시 선장은 중재할 권한이 없었다고 보고 그를 사면해 주었다는 것이다. 포로 수송선 닛타마루(新田丸)호의 사이토 도시오(齊藤 利夫) 소좌는 탈출 주도 포로 5명을 살해한 죄로 전후 처벌하려하였으나 1953년 2월까지 도피하여 처벌이 흐지부지 되었다.⁵⁸⁾

57) 林博史, 『BC 級戰犯裁判』, p. 83.

58) 최영호, “한국인 BC급 전범 문제.” 『한일시평』 제71호, 2005.

1948년 8월 27일, 요코하마의 점령군 제8군 군사법정은 미군 포로에 대해 생체해부 실험을 실시한 큐슈 제국대학 의학부 관계자, 군부 관계자 등 14명 중 토리스, 히로, 요코야마 등 5명에게 교수형, 츠츠이 등 4명에게 총신형을 판결했다. 그러나 인육을 먹은 혐의를 받고 있던 호리우치 등 5명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⁵⁹⁾

전후 광 법정에서는 소위 "지치시마 식인 사건"으로 알려진 연합군 포로에 대한 고문, 즉결처형, 식인의 죄를 물어 다치바나 요시오(立花 芳夫) 교수형에 처했다. 그는 1945년 중반에 지치시마에 주둔한 병력에 대한 식량이 넉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로잡은 연합군의 포로를 살해해 섭취할 것을 명령하였다. 웨이크(Wake, 大鳥島)에 있던 미군포로 98명을 살해한 사카이바라 시게마츠(酒井原 繁松) 대좌도 광 재판소에서 재판으로 1947년 6월 사형에 처해졌다.⁶⁰⁾

(7) 프랑스 전범재판

프랑스도 현 호치민(사이공) 법정에서 몇 백건이 넘는 재판을 했다. 프랑스는 1950년대에도 여전히 재판을 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그 절차는 다른 재판과 똑같은 형태를 따랐다.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프랑스는 자국민뿐만 아니라 연합국에 대한 범죄행위로도 일본군을 재판했다. 또 프랑스는 일본군이 자바섬에서 수십명의 민간인 여성들로 하여금 위안부 역할을 강요한 특별한 범죄를 포함하여 민간인 상대 범죄까지 재판했다. 그 피고는 단지 명령에 따랐다고 항변했지만 10년형을 언도받았다. 특히 프랑스법정에서는 일본군이 산 사람의 눈을 도려낸 사실도 밝혀졌다.⁶¹⁾

59) "큐슈 의대 전쟁포로 생체실험 인육사건." [http://www.rigvedawiki.net/w/큐슈 의대 전쟁포로 생체실험 인육사건](http://www.rigvedawiki.net/w/큐슈_의대_전쟁포로_생체실험_인육사건)(검색일:2019.6.30).

60) "다치바나 요시오." https://ko.wikipedia.org/wiki/다치바나_요시오(검색일:2019.6.30).

61) 아시아 전역 일본군 위안부관련 전범처벌에 관해서는 강혜정, 『일본의 군'위안부' 연구』,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1, pp. 544-49 참조.

(8) 네덜란드(인도네시아) 전범재판

1942년 3월이후 인도네시아/네덜란드와 일본간에는 교전이 없었음에도 1946년 8월 5일 바타비아(자카르타)를 시작으로 12곳에서 열렸다. 1949년 12월 14일 바타비아에서 종료되었다. 이 재판으로 448건의 전쟁범죄로 1,038명이 기소되고 236명이 사형판결을 받았다(조선인 4명, 대만인 2명 포함). 무기징역은 28명이었으나 1명은 유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조선인 대만인의 무기징역형은 없었다. 유기징역은 705명이며 조선인 64명, 대만인 5명이었다. 타이-미얀마 철도건설관계자에 관한 싱가포르 법정 사형 223건에 비해 형량이 높았으며 특히 사형 판결이 많았던 곳은 암본, 모로타이, 마카사르, 머나도, 쿠팡, 발릭파판, 폰티아낙 등 자바 외곽 법정에서 내려졌다.⁶²⁾

1946년 6월 1일 “네덜란드령 인도 법령 공보” 제44호에서 전쟁범죄는 “전쟁범죄란, 전쟁 중인 적국의 국민 및 적에게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에 의해서 전쟁 법규 및 관례를 위반하여 저질러진 사실을 말한다. 즉, 살인 및 집단살해, 조직적 폭력 및 학대행위, 인질의 살해, 시민의 고문 ...” 총 39개 항목의 전쟁범죄 열거하고 있다. 이 중 “비인도적 상태에서의 시민 억류” “재산 몰수” “부상자 또는 포로의 학대”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포로에게 일을 시키는 것” “억류 시민 또는 구금자의 학대” 마지막으로 “정전 조건에 반하여 적대행위를 위해 정보, 기회 혹은 수단을 공여하는 것”이 적시되어 있다.⁶³⁾

네덜란드 법정에서는 1천 5백명이 넘는 보르네오 원주민 처형을 지시한 일본군 부제독 가마다 마키아키(?)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또 플로레스 섬에서 2천여명의 네덜란드인 포로들에게 자행한 잔인함과 살인혐의로 4명의 일본인이 처형당했다. 프랑스법정과 더불어 네덜란드법정에서는 다량의 일본군위안소가 밝혀졌으며 이중 네덜란드법정에서는 이른바 “스마랑 강간 사건”이 밝혀졌다.⁶⁴⁾

이외에도 731부대 생체실험(소련 하바롭스크전범재판과 중공당 무순전범재

62) 하야시 히로후미 지음, 현대일본사회연구회 옮김, 『일본의 평화주의를 묻는다』, p. 90.

63) 우쓰미 아이코 지음, 김종익 옮김, 『적도에 묻히다』, 서울: 역사비평사, 2012, 303-304쪽.

64) 안 루프-오헤른 지음, 최재인 옮김, 『나는 일본군 성노예였다』, 고양: 삼천리, 2018 참조.

판, 셴양전범재판, 타이위안전범재판에서 처벌), 오료코호 생체실험(미국 군사재판에서 처벌), 도쿄 신주쿠 군의학교 생체실험(처벌 안됨), 규슈제대의대 생체실험(요코하마전범재판에서 처벌), 카니제도 생체실험(호주 군사재판에서 처벌), 웨이크섬 생체실험(미국 군사재판에서 처벌), 팔라우 생체실험(미국 군사재판에서 처벌), 사이판 세균병원(미국 군사재판에서 처벌), 필리핀 생체실험(?) 그리고 난징대학살, 상하이대학살, 일본군군위안소, 스마랑 강간 사건, 숙칭대학살, 마닐라 대학살, 바탕 죽음의 행진, 말레이시아 대학살, 인도차이나 대학살, 버마 대학살, 포로학대, 고문 및 100인 참수 경쟁, 300인 목베기, 우키시마호 폭침사건, 라하대학살, 알렉산드라병원 대학살, 산다칸 죽음의 행진, 산둥학살, 황민화정책, 삼광작전, 웨이크섬 대학살, 라바울 죽음의 행진과 학살, 버마 카라콘 사건 등이 언급된다. 다음은 9개국 개별 전범재판소에서의 판결결과를 종합한 도표이다.⁶⁵⁾

65) 히야시 히로후미 지음, 현대일본사학회연구회 옮김, 위의 책; 우쓰미 아이코 지음, 김종익 옮김, 위의 책 참조.

〈표 1〉 극동지역 전시범죄 재판결과 개요

재판국	건수	인원수	내역				
			사형	종신형	유기형	무죄	기타
네덜란드 (바타비아)	448	1,038 (조 68, 타 7)	236(10) (조 4, 타 2)	28 (1)	705 (조 64, 타 5)	55	14
미국 (요코하마, 상해 등)	456	1,453 (조 3, 타 4)	143(3) (조 1, 타 1)	162 (2)	871 (조 2, 타 3)	188	89
영국 (싱가포르, 홍콩 등)	330	987 (조 56, 타 26)	223 (조 10, 타 6)	54 (조 9)	502 (조 37, 타 20)	116	83
호주 (싱가포르 등)	294	949 (조 5, 타 95)	153 (조 0, 타 7)	39 (조 1)	455 (조 4, 타 84)	267	36 (타 1)
프랑스 (호치민)	39	230	63 (37)	23 (4)	112 (2)	31	1
필리핀 (마닐라)	72	169	17	87	27	11	27
중화민국/중국 (난징, 셴양 등)	605	883 (조 8, 타 41)	149 (조 0, 타 5)	83	272 (조 8, 타 35)	350	29 (조 0, 타 4)
러시아 (하바롭스크) 기타	12						12
합계	2,256	5,702 (조 140, 타 4)	984 (조 23, 타 21)	475 (조 10, 타 0)	2,944 (조 107, 타 147)	1,018	279 (조 0, 타 5)

출처: 하야시 히로후미, 『BC級戰犯裁判』, 岩波新書, 2005; 우쓰미 아이코, 김종익 옮김,

『적도에 묻히다』, 304쪽 등을 수정 및 참조한 것임.

* 여기서 “조”는 조선인, “타”는 대만인을 의미함.

V. 결론 : 극동국제군사재판의 한계와 과제

비록 일부이기는 하나 일본은 아직도 대일평화조약 제11조에 명시된 “판결”(judgements)을 두고 “재판”은 수용하지만 “판결”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⁶⁶⁾ 이는 인도 출신 팔 재판관의 전원 무죄를 주장한 반대의견만이 정당한 판결이라는 것과 같다. 극동재판은 15년 침략전쟁의 기간에서나마 일본이 일으킨 전쟁의 책임을 묻고 그 전쟁의 수행과정에서 벌어진 온갖 잔혹한 범죄를 처단하기에도 너무나 큰 한계가 있었다. 유엔 전범위원회의 초대 의장이었던 라이트(Wright)경은 “대다수의 전범들이 처벌을 면할 것이다. 단지 10%만이 재판을 받을 것이다.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선례를 만드는 것 뿐이다” 라고 실토하였다. 실제 일본인 전범들이 처벌받은 것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⁶⁷⁾

이것은 극동 전범재판이 실제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위법한 재판이었으며 나아가 그 재판의 대상이 된 침략행위와 비인도적 행위 등이 연합국에 의해 조작되었거나 과장되었던 것이라는 신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극동 재판에 대한 비판은 나아가 일본이 벌인 전쟁이 “정당한 전쟁”(just war)이었다는 지경으로 확대 비약되고 있다. 그 진정함이나 발언의 동기조차 확인할 수 없는 외국인의 발언들을 인용하면서 이들은 당시의 전쟁이 아시아인의 해방을 위한 “성전”이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개전 중일 때 일본 군국주의가 침략의 손을 뻗지 않은 아시아 태평양지역은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일본에 점령된 영토는 나치 독일의 그것보다 더욱 광대했다. 거의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남북 7천km, 동서 1만km에 달하는 광대한 전역에서 전사자 117만명, 부상자 461만명, 일반 시민의 사상자 678만명의 큰 희생을 치러야 했다. 이 전쟁과정에서 또는 점령지에서 일본이 벌인 잔혹한 범죄는 그에 대한 응징은 예고된 결과였다. 그러

66) “상반된 2차대전 '전범 재판'.” 『중앙일보』 2013년 7월 11일.

67) 林博史, 『BC 級戰犯裁判』, 岩波新書, 2005, p. 60.

나 기나긴 침략과 학살의 전쟁을 일으키고 수행한 최고의 지도자 아키히토 일왕은 멀쩡하게 전쟁의 책임을 면하였고 아우슈비츠의 그 유명한 생체실험과 비견될 만한 “731부대”의 지독한 범죄는 미국 정부의 우산 하에 불문 처리되었던 사실은 주지된 바이다. 한편 일본 침략전쟁에 동원된 조선인 군인과 군속은 24만 2,341명, 사망은 22,182명에 이른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앞서 본바와 같이 그 오랜 전쟁이 끝난 뒤 1945년과 1956년 사이, 연합국인 9개국에서는 984명의 일본인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하고, 약5백명을 무기징역형, 약3천명을 유기징역형에 처했다. 이들은 다양한 형태의 전쟁범죄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연합국들이 각자 수행한 일본인 전범에 대한 처벌의 숫자와 그 처벌 유형은 추가적 연구를 필요로 한다.⁶⁸⁾

68) 1955년부터 1973년까지 일본정부는 연합군에 참여한 각국에 자료수집 의뢰를 하여 전범관련 재판의 복사본 혹은 원본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쿠누키 에나 지음, 이영학 옮김, “일본의 한국인 BC급 전범관련 자료 현황에 대한 연구.” 『기록학연구』 54권, 2017, p. 116. 한편 현재 중국은 이러한 극동 전범재판에 대한 연구를 가속화, 심층화하고 있다.

<참고문헌>

- 강혜정, 『일본의 군‘위안부’ 연구』,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1.
- 김명기, 『정신대와 국제법』, 서울: 법지사, 1993.
- _____, 『국제법원론』 하, 서울: 박영사, 1997.
- 김석현, “국제인도법상 전범재판.” 「전후법으로서의 전시범죄 재판」, 동북아역사재단, 2017.12.
- 박원순, 『아직도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서울: 한겨레신문사, 1996.
- 외무부, 『한일관계참고문서집』, 외무부, 1969.
- 우쓰미 아이코 지음, 김종의 옮김, 『적도에 묻히다』, 서울: 역사비평사, 2012.
- 우쓰미 아이코, “일본에서의 전후보상운동: 한국인 BC급 전범문제를 중심으로.” 「한일간 미해결 과거청산 현안 점검을 위한 학술회의」(동북아역사재단, 2018.7.13.).
- 이원홍, “일본과 일본인 제21화.” 『경제풍월』 제202호, 2016.
- 안 루프-오해른 지음, 최재인 옮김, 『나는 일본군 성노예였다』, 고양: 삼천리, 2018.
- 존 다우어 지음, 최은석 옮김, 『패배를 꺼안고』, 민음사, 2009.
- 쿠누키 에나 지음, 이영학 옮김, “일본의 한국인 BC급 전범관련 자료 현황에 대한 연구.” 『기록학연구』 54권, 2017.
- 하야시 히로후미 지음, 현대일본사회연구회 옮김, 『일본의 평화주의를 묻는다』, 서울: 논형, 2008.
- Babovic, Aleksandra, *The Tokyo Trial, Justice, and the Postwar International Order*. Osaka : Palgrave Macmilan, Osaka Univ.
- Bernhardt, Rudolf,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Amsterdam: Elsevier, 1997.
- Brownlie, Ian,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Fifth Ed. Oxford: Oxford Univ. Press, 1998.
- Grundy, Hona, “A detailed analysis of the problems and pitfalls facing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with regards to its jurisdiction over the crime of aggression.” Durham E-Theses, 2009.
- Mei Ju-ao, *The Tokyo Trial and War Crimes in Asia*. Singapore: Palgrave Macmilan, 2018.
- Roling, B. V. A. & C. F. Ruter(eds.), *The Tokyo Judgment*. Amsterdam: APA-University Press, 1977.
- Rosene, Sabtai, “The Effect of Change of Sovereignty upon Municipal Law.” *B.Y.I.L.* Vol. 27, 1950.
- Sedgwick, James Burnham, “The Trial Within : Negotiating justice at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 1946-1948.”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 ПЕТРЕНКО, Владимир, “Неминуемый приговор японски м милитаристам.” ДВУ, 11월호 2016.

- 이상호, “맥아더와 극동국제군사재판,” 『세계와 소통하는 한국학』, (세계한국학대회, 2008.9).
- 内海愛子, 『戦後補償から考える日本とアジア』, 東京: 山川出版社, 2002.
- 茶園義男, 『BC級戦犯軍事法廷資料 ②』, 東京: 不二出版, 1984.
- _____, 『日本BC級戦犯資料 ①』, 東京: 不二出版, 1988.
- 大須賀, ウィリアム, 『ある日系二世が見たBC級戦犯の裁判』, 東京: 草思社, 1991.
- 林博史, 『BC級戦犯裁判』岩波新書, 2005.
- 孙家紅, 『伯力城审判』, 北京:九州出版社, 2014.
- 严海建, “南京审判研究,” 南京师范大学, 2007.
- 王昆仑, “新中国沈阳军事法庭对日本戦犯の审判,” 沈阳师范大学, 2017.
- 朝日新聞法廷記者團 著, 『東京裁判』 제2집, 1954.
- 何勤華 朱淑崩 吳賀, 『纽伦堡审判』, 北京: 商務印書館, 2015.
- 최영호, “한국인 BC급 전범 문제.” 『한일시평』 제71호, 2005년 7월 23일.
- 유하영, “극동국제군사재판소(IMTFE) 재판에서의 인도에 반한 범죄의 처벌.” 『동북아역사재단 뉴스』, 2018년 3월호.
- 内海愛子, “김은 왜 심판을 받았는가—식민지지배 전쟁재판·전후보상을 생각한다.” 『제3회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한일공동기획 특별전: 전범이 된 조선청년들, 한국인 포로감시원들의 기록』(민족문제연구소, 2013).
- “How the Tokyo Trial Crumbled.” <http://cretaceous.tistory.com/58>(검색일:2019.6.30).
- 中國情報, “선양시(沈阳市), 일제 전범 재판했던 '특별군사법정' 복원 개관.”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dasolsys01&logNo=220003786349>(검색일:2019.6.30).
- “出离愤怒了!除了731 日军竟然还有一支细菌部队(분노, 731 세균부대의 실재).” http://m.sohu.com/news/a/230812985_428290(검색일: 2019.6.30).
- “큐슈 의대 전쟁포로 생체실험 인육사건.” [http://www.rigvedawiki.net/w/큐슈 의대 전쟁포로 생체실험 인육사건](http://www.rigvedawiki.net/w/큐슈_의대_전쟁포로_생체실험_인육사건)(검색일:2019.6.30).
- “태양 아래서의 정의, 특별기획: 일본, 어제의 군국주의 그리고 내일.” [http://cafe.daum.net/kookminjp/3vYg/134?q=카니발리즘 시체를 자르는 행위 호주 전범](http://cafe.daum.net/kookminjp/3vYg/134?q=카니발리즘_시체를_자르는_행위_호주_전범)(검색일: 2019.6.30).
- “다치바나 요시오.” https://ko.wikipedia.org/wiki/다치바나_요시오(검색일:2019.6.30).
- “상반된 2차대전 '전범 재판.’ 『중앙일보』 2013년 7월 11일.
- “Statement of Atrocities.” The Moscow Conference, October 1943. <http://avalon.law.yale.edu/wwii/moscow.asp>(검색일:2019.6.30).
- “The Nuremberg Trial and the Tokyo War Crimes Trials(1945–1948).” <https://history.state.gov/milestones/1945-1952/nuremberg>(검색일 2019.6.30).

<Abstract>

War Crimes Trials in the Far East after World War II

Hayoung Yu (Research Fellow, NAHF)

The paper is an introduction to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o-called BC-type war crimes trials, established by the Asian Union after World War II. In general, only the Tokyo War Crimes Tribunals by the Charter of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 is known as the Far East War Crimes Trials, but in reality, most of the death penalty and punishment were made at individual and domestic war tribunals held in each 9 Countries. Compared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of Nuremberg and its subsequent trials, the Far East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was led by the United States, which caused quite a few problems with the emperor and so-called 731 units.

In Korea, the two countries were liberated from the postwar international order, not from the victorious or defeated countries, and the division of the two Koreas and the Korean War left little participation in the postwar process and the formation of postwar international order. As the classic case after Japan's surrender, civilian and military, forced labor victims should be considered his Japanese nationality be punished for war crimes and any compensation or compensation.

Given its own values in the Far East Tribunals, the Soviet Union's Khabarovsk and the individual Chinese war crimes tribunal's punishment of Japanese war criminals is regarded as valuable in establishing justice. In addition, the killing of civilians, forcing prisoners to work, and conducting experiments on human life have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human rights regulations. Cruel penalties for brutal war crimes have the net function of preventing war crimes. War crimes should be applied the Principle of "Non-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s to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Key Words : Tokyo, Subsequent Trials, Class B.C War Crime, Xabaropsk, 731

투고일: 2019년 6월 29일, 수정일: 2019년 7월 30일, 게재확정일: 2019년 8월 5일